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6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 의 자 : 정태호 · 이연희 · 곽상언
전현희 · 이수진 · 안호영
이학영 · 김주영 · 이주희
조승래 · 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 1월 1일부터는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이 제도는 원재료에 비해 완성품의 관세가 더 낮은 역관세 문제를 해소하고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미국 · EU 등 주요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 감면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사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전환됨. 그러나 실제로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품이 복수국가에 걸쳐 생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TA를 통한 무

관세 적용은 어려우며, 현재도 FTA 활용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국가기간산업으로 항공기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도체·배터리·항공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항공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반면, 미국·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또는 자국 관세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며 자국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TCA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약 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MRO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MRO 클러스터 조성, 국산부품 개발 확대, 우주항공청 중심의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품 수입과 관련한 최소한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

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외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6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	203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3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3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3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제89조(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 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 면한다.	⑥ ----- ----- ----- ----- ----- ----- -----.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 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 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 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 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1. ----- ----- ----- ----- ----- ----- -----.

2025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100	2026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80	2027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60	2028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40	2029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20
2. (생 략) ⑦ · ⑧ (생 략)				

2026년 1월 1일 부터 20 30년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100	2031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80	2032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60	2033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40	2034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의 20
2.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